

투자위험등급:
4 등급
[낮은위험]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 UBS 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0년 11월 1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0년 11월 1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수익증권[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이전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실적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별첨] 연금저축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
펀드코드	3142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전환형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 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 가능합니다.
- 나. 모집(판매)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ubs-hana.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3142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1년 2월 1일	최초설정일
2001년 9월 1일	채권평가비용 변경
2004년 10월 26일	보수 이원화
2006년 7월 1일	보수 배분을 변경
2007년 8월 1일	회사명 변경에 따른 펀드명 변경
2007년 11월 5일	운용역 변경 (김세윤->김창섭)
2009년 2월 3일	법적용 변경(증권투자신탁업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009년 4월 29일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하나 UBS 인 Best 연금채권투자신탁(제 1 호)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
2009년 12월 1일	운용역 변경 (김창섭 -> 손수빈)
2010년 11월 15일	운용역 변경 (손수빈 -> 공경일)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 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하나 UBS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빌딩 (대표전화: 02-3771-7800)

주 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0.11.1 현재)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공경일	1966	부장	10 개	9,174 억	-서울대대학원 -채권운용 8년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책임운용역	운용기간
김세윤	2006년 6월 1일 ~ 2007년 11월 04일
김창섭	2007년 11월 5일 ~ 2009년 11월 30일
손수빈	2009년 12월 1일 ~ 2010년 11월 14일
공경일	2010년 11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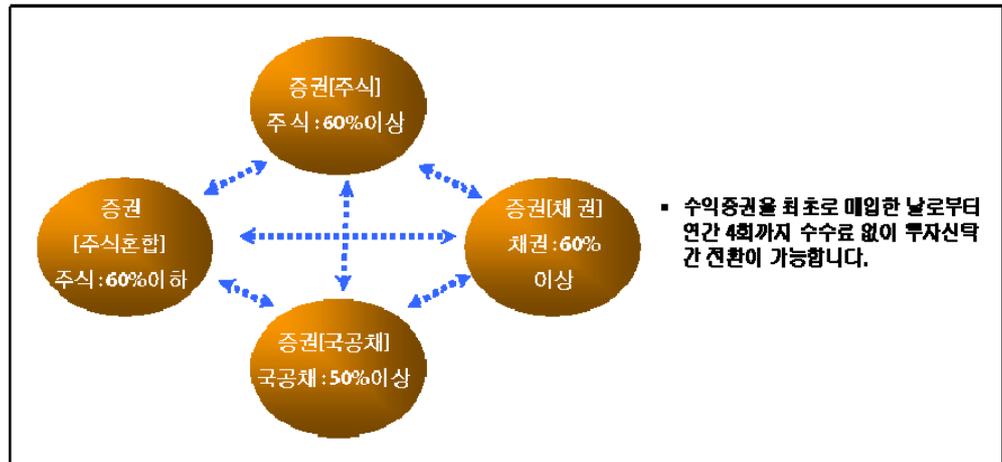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채권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전환형

나. 전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전환형 상품으로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매년 4회에 한하여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및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간에 자유로이 전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구분	내용
주요투자대상	주식 : 60%이상, 채권 : 40%이하
주요투자목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

주요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ttom-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 종목 발굴
주요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주식투자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으로써 시장 변동성이 큰 주식에의 투자가 60% 이상 투자하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13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구분	내용
주요투자대상	주식 : 60%이하, 채권 : 50%이하
주요투자목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하를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50%이하, 어음에 40%이하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p>[주식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ttom-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p>[채권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포트폴리오는 초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성 • 기본 포트폴리오 구축 후, 금리 변동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향성(Duration) 전략과 섹터전략 시행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 추가수익 기회 탐색으로 Relative Value Trading 전략 시행
주요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주식투자위험, 채권투자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산총액의 6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으로써 시장 변동성이 큰 주식에의 투자가 60% 이하 투자하므로 5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13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구분	내용
주요투자대상	채권 : 60%이상 (국공채 : 50% 이상), 어음 : 40%이하
주요투자목적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포트폴리오는 초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성 • 기본 포트폴리오 구축 후, 금리 변동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향성(Duration) 전략과 섹터전략 시행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 추가수익 기회 탐색으로 Relative Value Trading 전략 시행
주요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채권투자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써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채권형 실적배당상품으로 5 등급중 5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13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다만, 주식관련사채는 40% 이하, 사모사채권에의 투자 3%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사모사채권을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2.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4.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6.집합투자증권등	5%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7.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한 증권 차입은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 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 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 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p>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p>	<p>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p>	
<p>파생상품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 	<p>최초설정 일로부터 1월간</p>

	<p>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p> <p>-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p>	
	<p>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등, 투자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닙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 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운용전략

- 기본 포트폴리오는 초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성
- 기본 포트폴리오 구축 후, 금리 변동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향성(Duration) 전략과 섹터전략 시행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 추가수익 기회 탐색으로 Relative Value Trading 전략 시행

(2) 세부운용

운용전략	세 부 내 용
Duration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인분석을 통한 방향성 탐색과 Duration전략 시행 ▪ 시장 Overshooting 발생에 따른 투자기회 발생시 탄력적인 시장대응
Sector Allo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더멘탈, 채권수급, 산업분석을 통해 최적의 Sector Allocation 실행
Relative Value Investment (Yield Enhanc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채권간 상대가치 ▪ Yield Curve Trading * Slope Analysis, Shoulder & Rolling Effect, YC Riding
Security Se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발굴 ▪ 동일 관기/등급 대비 저 평가 종목 위주 편입

(3)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잔존만기 1년이하 통안40%+회사채50%+call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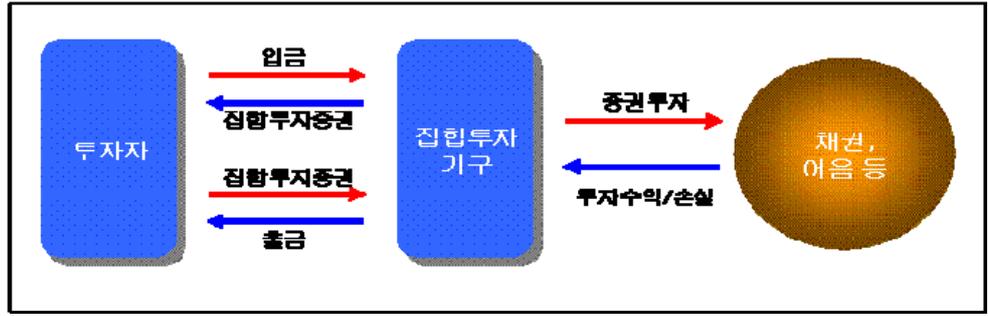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KIS종합채권지수 잔존만기 1년이하 통안40%+회사채50%+call 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금리변동위험 관리방안
 - Top-down 및 Bottom-up 을 병행한 리서치 활동
 - 금리 방향성에 의존한 잦은 듀레이션(Duration) 대응 최소화
- 신용위험 관리방안
 - 산업별/발행기업별 분산투자로 신용위험 최소화
 - 내부 신용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전문인력(Credit Analyst)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 유동성위험 관리방안
 - 투자자금의 만기를 감안한 자산 편입/운용으로 펀드내 적정 유동성 확보에 노력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안정적인 채권, 우량 CP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에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 일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특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기타 투자위험 등 :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 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자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

변동위험	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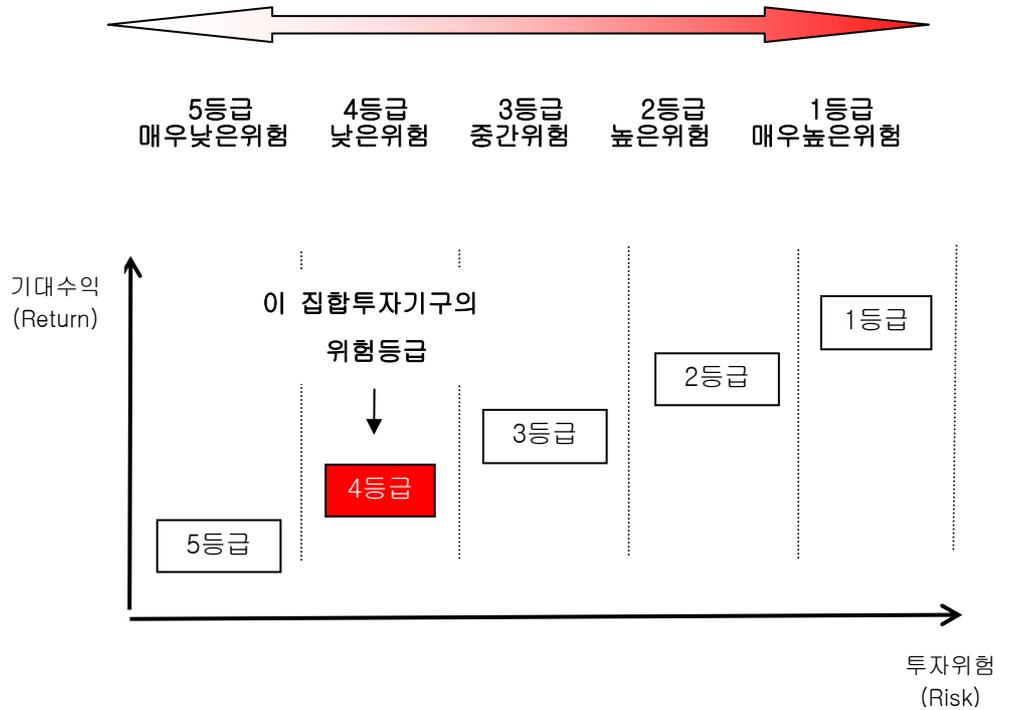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환매에 따른 위험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1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타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5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보다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이자율이 큰폭으로 상승하거나 신용등급 하

락시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금리변동 및 신용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펀드예시(주)]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30% 이상인 금융공학형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 UBS 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이전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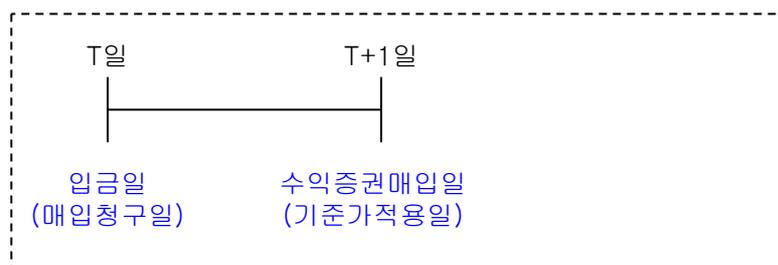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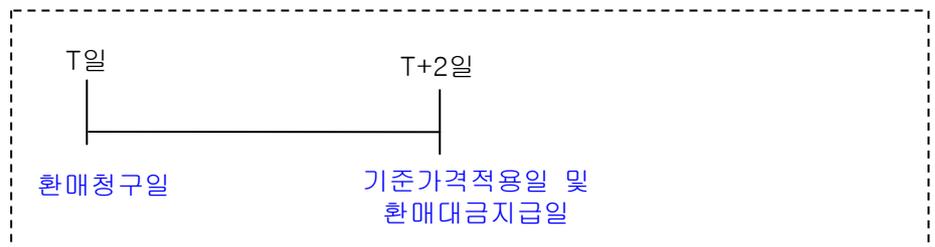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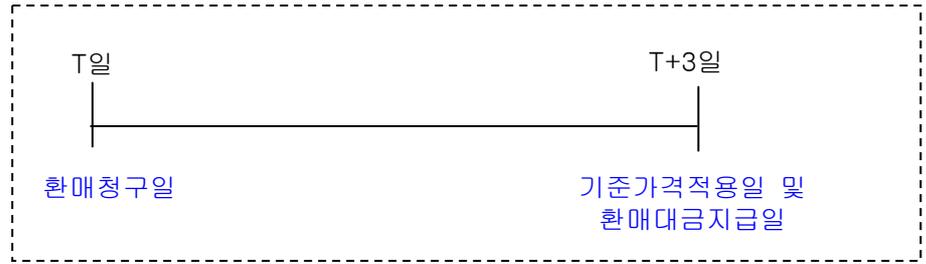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이 투자신탁이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부담비율	비고 (부담시기)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1회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가 17시[오후 5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4)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6)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7)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다. 전환

- (1) 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매년 4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하나UBS 인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2) 하나UBS 인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3) 하나UBS 인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 4) 하나UBS 인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 (2) 위에서 열거한 투자신탁 이외의 다른 투자신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약관의 변경의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연금증권[국공채] 또는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4) 수익자가 연금증권[주식혼합] 또는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5)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 1) 연금증권[국공채]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 2) 연금증권[주식혼합]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 다만,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6) 연금증권[국공채]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시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영업일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연금증권 [국공채]	타투자신탁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판매회사의 영업일
연금증권[채권]	타투자신탁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 투자신탁간의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영업일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연금증권 [주식혼합]	타투자신탁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연금증권[주식]	타투자신탁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 투자신탁간의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시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경과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라. 집합투자기구계약의 이전

-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판매회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신탁 계약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가 이전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한도 초과등의 사유로 이전청구의 접수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응하지 아니합니다.
- (3)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일괄 이전처리 합니다.
 - 1) 연금증권투자신탁[국공채]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4영업일)에 이전합니다.
 - 2)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4영업일)에 이전합니다.
- (4) 연금증권투자신탁[국공채]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의 이전청구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의 이전청구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5시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경과 후 청구한 이전의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이전청구	이전 청구 투자신탁	이전 청구 투자신탁	영업일
------	------------	------------	-----



투자신탁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이전처리일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연금증권[국공채]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판매회사의 영업일
연금증권[채권]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청구의 취소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이전청구 투자신탁	이전 청구 투자신탁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이전 청구 투자신탁 이전처리일		영업일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연금증권 [주식혼합]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한국거래소의 개장일
연금증권[주식]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청구의 취소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 당일 15시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경과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이전청구의 취소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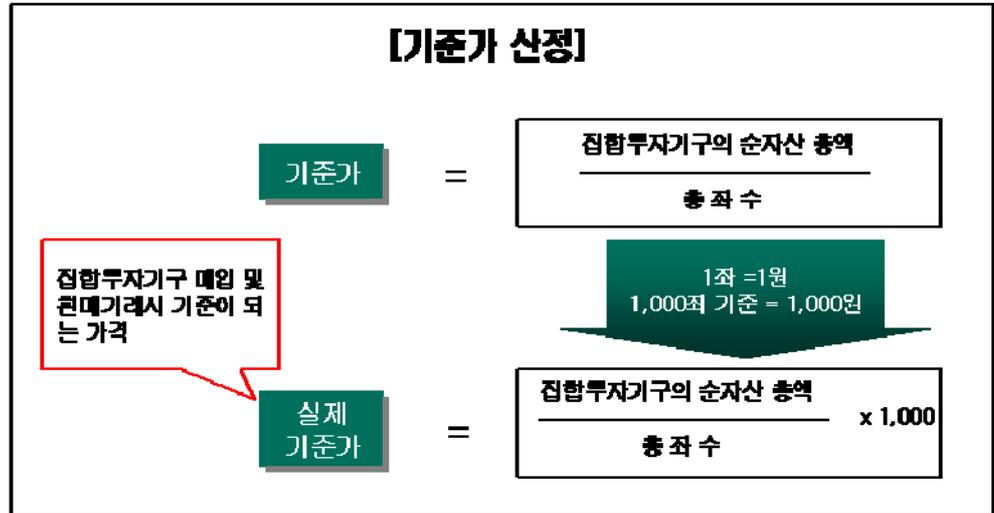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중 낮은 가격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전환/이전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해지가산세 (5년이내)	매년 불입한 금액 (300만원한도)의 누계액 * 2.2% (주민세포함)	해지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295%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700%	
신탁업자보수	0.040%	
일반사무관리보수	0.005%	
기타비용 ^{주1)}	0.018%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058%	-
증권거래비용 ^{주2)}	0.003%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09.7.31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09.7.31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원)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108,460	341,919	599,308	1,364,193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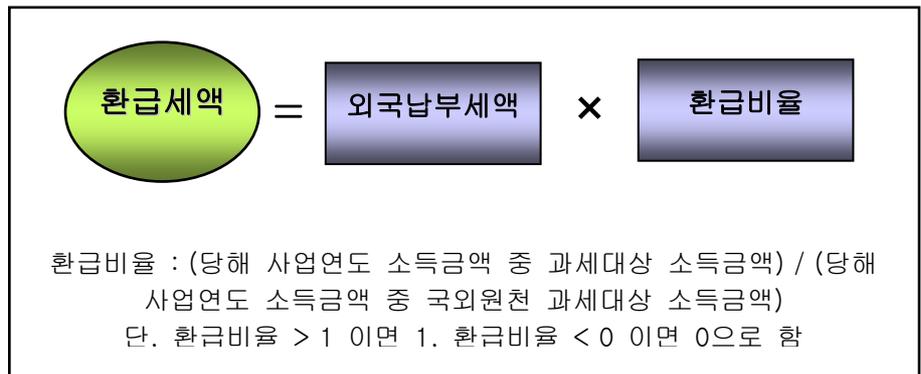
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은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2) 세제관련 사항 (**연금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1) 과세방안 (주민세는 소득세 또는 해지가산세의 10%)

- 연금수령액 중 기소득공제 받은 금액(연금300만원 한도)과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으로 5%를 과세합니다.
- 연금저축투자자가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20%를 과세합니다.
- 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지시 불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2%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연금수령시 과세방법

- 불입액은 연간 1,200만원까지 가능하나 소득공제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다만, 당해 연도의 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연금수령시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총연금 수령액의 구성 요소>

이 자 ①	이 자 ②
불입원금 ③ (연 300만원)	불입원금 ④ (불입금 중 연 300만원 초과금액)

- 이자소득 부분(①,②)은 전액과세대상
- 매년 소득공제받은 연간 300만원 이내 불입액(③)은 한번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연금 수령시 이자부분과 합하여 과세대상
-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부분 (④)은 이미 불입당시에 과세된 소득 (근로소득에서 과세된 소득으로 본다)이므로 이는 수령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3) 연금투자신탁의 중도해약시 과세 방법

- 중도해지에 따른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면(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포함) 일시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다만,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산식]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해지가산세 :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2%의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1)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함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중도해지에 따른 소득세(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세제혜택에 대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세제혜택]

-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
- 가입한도 :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 300만원내
- 가입한도 : 1인 다수 금융기관 또는 1금융기관내 다수 통장 개설 가능
- 종목전환 및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
 - 종목전환 :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매년 4회 전환 (전환수수료 없음)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신탁 계약의 이전을 할 수 있음(이전수수료 없음)
- 세제혜택
 - 혜택조건 : 10년이상 적립(최소 만55세이상 적립)
 - 소득공제 : 당해연도 불입액의 100%(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5%)
- 중도해지
 - 연금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20%로 과세 (단,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가입후 5년내 중도해지 시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2% 해지가산세 부과 (단, 저축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소득공제한도는 당해 불입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위의 세제
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8 기 (2009.1.31)	안진회계법인	적정
제 7 기 (2008.1.31)	-	-
제 6 기 (2007.1.31)	-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제 9 기(반기)	제 8 기	제 7 기
	20090731	20090131	20080131
I. 운용자산	20,044,111,699	17,807,374,776	8,970,413,307
증권	15,453,729,476	13,805,402,958	7,470,456,468
현금 및 예치금	625,190,547	3,213,968,384	1,200,732,691
기타운용자산	3,965,191,676	788,003,434	299,224,148
II. 기타자산	219,773,317	196,659,476	87,877,043
자산총계	20,263,885,016	18,004,034,252	9,058,290,350
II. 기타부채	52,777,971	43,638,806	22,421,326
부채총계	52,777,971	43,638,806	22,421,326
I. 원본	19,769,382,208	16,982,917,191	8,706,826,467
II. 수익조정금	26,154,282	198,587,377	-23,046,506
III. 이익잉여금	415,570,555	778,890,878	352,089,063
자본총계	20,211,107,045	17,960,395,446	9,035,869,024
I. 운용수익	515,741,776	906,140,487	452,181,771
이자수익	507,890,263	665,604,482	506,653,048
매매/평가차익(손)	7,849,369	240,524,354	-54,474,329
기타이익	2,144	11,651	3,052
II. 운용비용	100,171,221	127,249,609	100,092,708
관련회사보수	98,649,634	124,923,217	99,495,358
기타비용	1,521,587	2,326,392	597,350
III. 당기 순이익	415,570,555	778,890,878	352,089,063
* 매매회전율	0	0	0
* 매매수수료	190,229	522,672	271,810

주)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

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대차대조표	제 9 기(반기)	제 8 기	제 7 기
	20090731	20090131	20080131
I. 운용자산	20,044,111,699	17,807,374,776	8,970,413,307
(1) 현금 및 예치금	625,190,547	3,213,968,384	1,200,732,691
현금 및 현금성자산	625,190,547	3,213,968,384	1,200,732,691
(2) 대출채권	3,965,191,676	788,003,434	299,224,148
콜론	1,497,002,396		
매입어음	2,468,189,280	788,003,434	299,224,148
(3) 유가증권	15,453,729,476	13,805,402,958	7,470,456,468
채무증권	15,453,729,476	13,805,402,958	7,470,456,468
II. 기타자산	219,773,317	196,659,476	87,877,043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0	0
정산미수금			1,050,000
미수이자	177,196,033	140,750,739	63,769,737
미수배당금	0	0	0
선급비용	42,577,284	46,109,577	19,719,876
미수환급세액	0	9,799,160	3,337,430
자산총계 (I + II)	20,263,885,016	18,004,034,252	9,058,290,350
III. 기타부채	52,777,971	43,638,806	22,421,326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수수료미지급금	52,608,890	43,562,556	22,372,577
기타미지급금	169,081	76,250	48,749
부채총계 (I + III)	52,777,971	43,638,806	22,421,326
I. 원본	19,769,382,208	16,982,917,191	8,706,826,467
원본액	19,769,382,208	16,982,917,191	8,706,826,467
II. 이익잉여금	415,570,555	778,890,878	352,089,063
당기순이익	415,570,555	778,890,878	352,089,063
III. 설정조정금	63,623,703	249,734,331	52,559,437
IV. 해지조정금	-37,469,421	-51,146,954	-75,605,943
자본총계 (I + II + III + IV)	20,211,107,045	17,960,395,446	9,035,869,024
* 총좌수	19,769,382,208	16,982,917,191	8,706,826,467
* 기준가격	1,022.34	1,057.56	1,037.79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손익계산서	제 9 기(반기)	제 8 기	제 7 기
	20090201-20090731	20080201-20090131	20070201-20080131
I. 운용수익	515,741,776	906,140,487	452,181,771
(1) 투자수익	507,892,407	665,616,133	506,656,100
이자수익	507,890,263	665,604,482	506,653,048
기타이익	2,144	11,651	3,052
(2) 매매차익 과 평가차익	136,127,432	313,489,635	38,355,188
채무증권매매차익	126,667,864	311,372,223	7,715,262
파생상품매매차익	7,340,000	830,000	30,600,000
유동자산매매차익	2,119,568	1,287,412	39,926
(3) 매매차손 과 평가차손	128,278,063	72,965,281	92,829,517
채무증권매매차손	126,063,595	61,302,716	69,243,766
파생상품매매차손	112,000	10,577,000	23,498,000
유동자산매매차손	2,102,468	1,085,565	87,751
II. 운용비용	100,171,221	127,249,609	100,092,708
운용수수료	27,987,129	36,035,537	28,700,581
판매수수료	66,398,800	84,082,942	66,968,034
수탁수수료	3,794,216	4,804,738	3,826,743
사무수탁수수료	469,489		
감사인보수비	725,448	1,463,000	
기타비용	796,139	863,392	597,350
III. 당기순이익 (I - II)	415,570,555	778,890,878	352,089,063
* 총좌수	19,769,382,208	16,982,917,191	8,706,826,467
* 당기순이익(좌당 or 1000 좌당)	21.02	45.86	40.44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비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070201 - 20080131	8,699	8,699	3,322	3,375	3,663	3,738	8,707	8,684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348 / 348
20080201 - 20090131	8,707	8,707	10,225	10,475	2,267	2,319	16,983	17,18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319 / 319
20090201 - 20090731	16,983	16,983	4,559	4,623	2,785	2,822	19,769	19,79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1,012 / 1,012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



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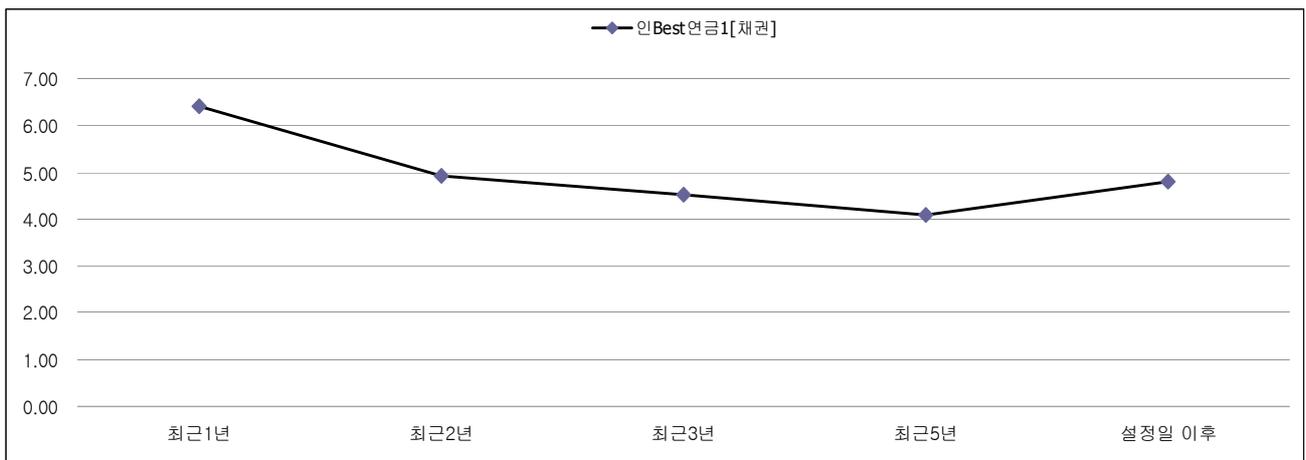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KIS종합채권지수 잔존만기 1년이하 통안40%+회사채50%+call 10%)

주2)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2009년 7월 31일)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기준일 : 2009년 7월 31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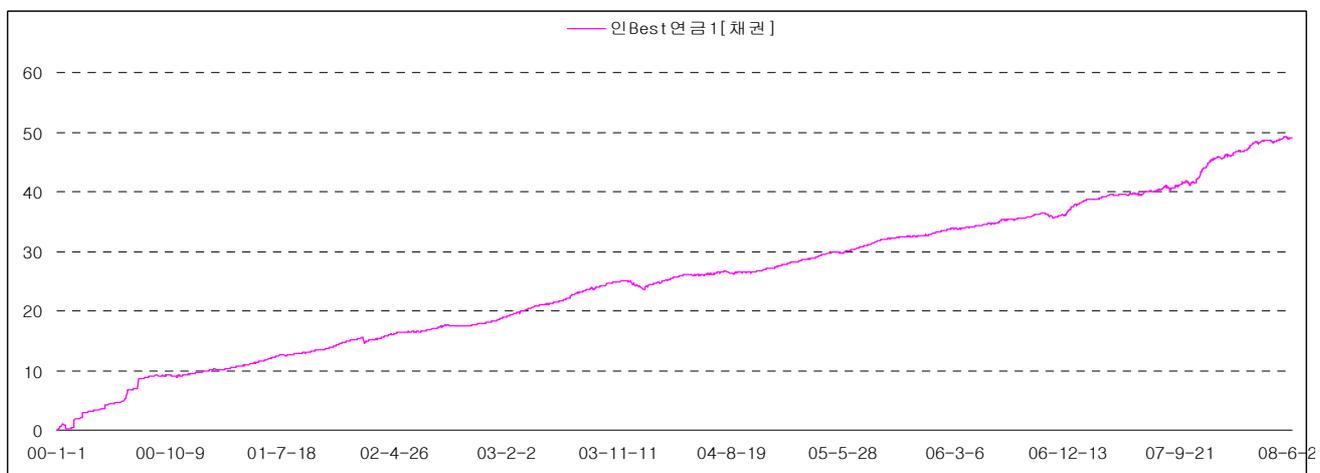
연도	최근1년 2008.08.02 ~ 2009.08.01	최근2년 2007.08.02 ~ 2009.08.01	최근3년 2006.08.02 ~ 2009.08.01	최근5년 2004.08.02 ~ 2009.08.01	설정일 이후 2001.02.01 ~ 2009.08.01
인Best연금1[채권]	6.42	4.94	4.51	4.09	4.80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준일 : 2009년 7월 31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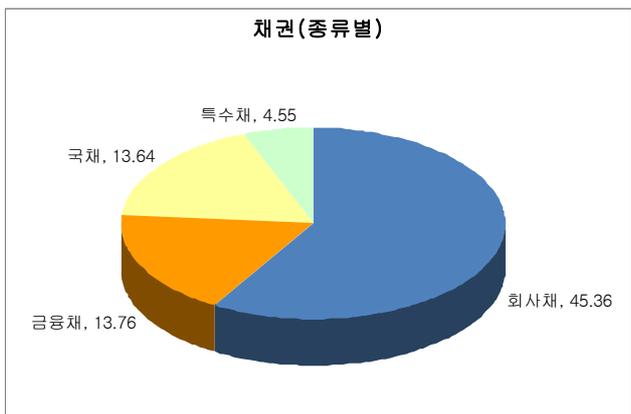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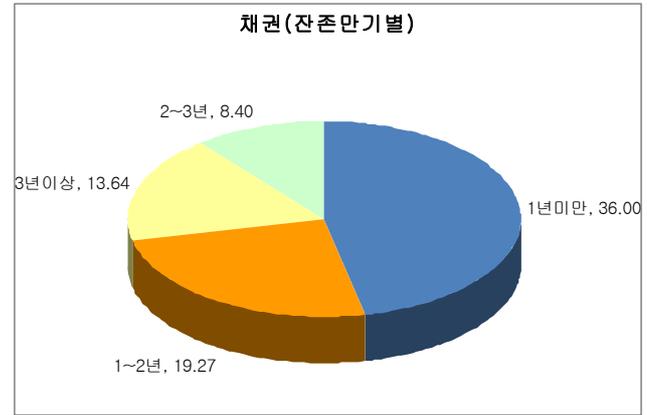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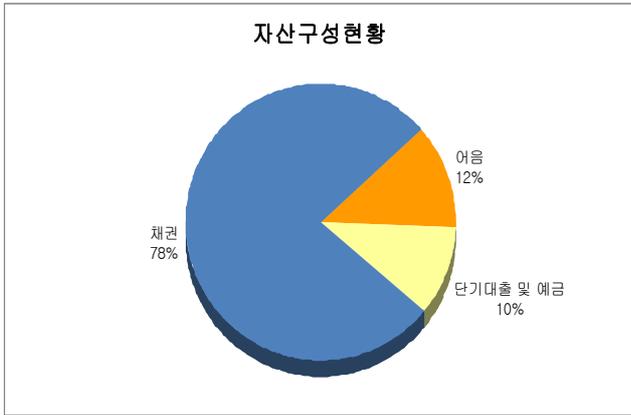
연도	최근1년차 2008.08.01 ~ 2009.07.31	최근2년차 2007.08.01 ~ 2008.07.31	최근3년차 2006.08.01 ~ 2007.07.31	최근4년차 2005.08.01 ~ 2006.07.31	최근5년차 2004.08.01 ~ 2005.07.31
인Best연금1[채권]	6.42	3.48	3.67	3.51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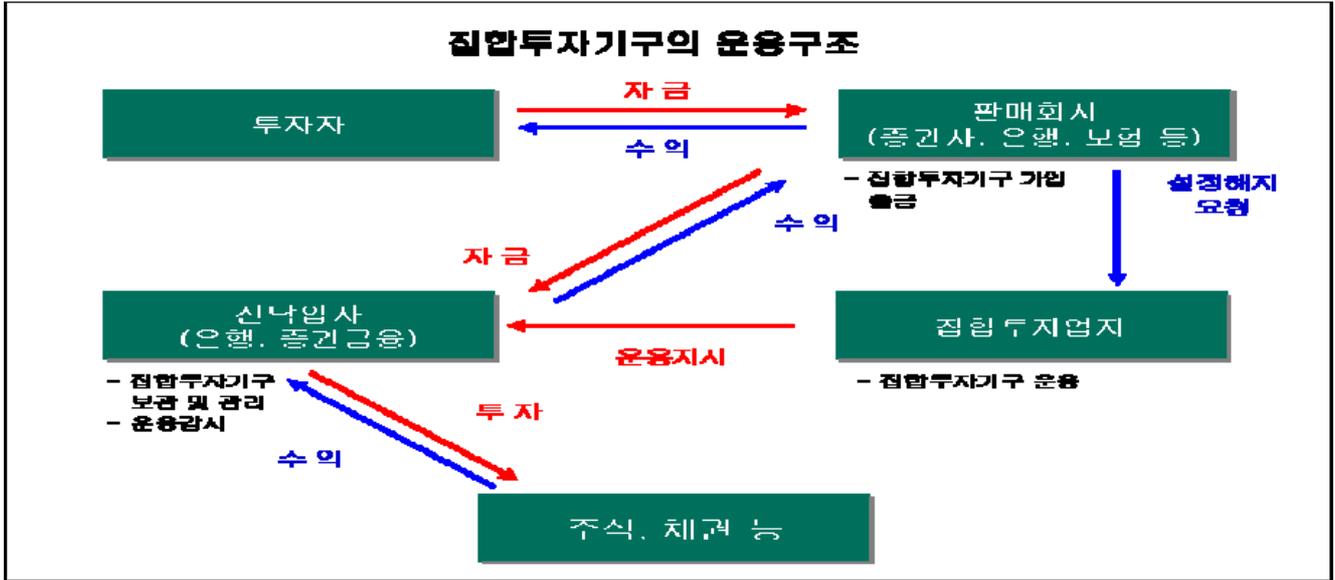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09. 7. 31 기준 / 단위 : 백만원, %)

통화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한국 원	0 (0.00)	15,669 (77.32)	2,474 (12.21)	0 (0.00)	2,123 (10.48)	0 (0.00)	20,266 (100.00)					
합계	0 (0.00)	15,669 (77.32)	2,474 (12.21)	0 (0.00)	2,123 (10.48)	0 (0.00)	20,266 (100.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하나 UBS 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02-3771-7800, www.ubs-hana.com)
회사연혁	1968.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 1970. 5.20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업무 시작 1977. 2.14 한국투자공사 대한투자신탁과 증권감독원으로 분리 2000. 6. 4 증권사 전환으로 대한투자신탁증권(주)로 사명 변경 2000. 6.27 대한투자신탁운용(주)설립(대한투자증권(주) 전액출자) 2000. 7. 1 영업개시 2007.7.27 하나 UBS 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자본금	450 억
주요주주현황	UBS AG, 하나대투증권

나. 주요업무

-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기타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규정한 사항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09. 3.31	'10.3.31	항 목	'09. 3.31	'10. 3.31
현금및예치금	56,826	57,357	영업수익	48,426	44,317
유가증권및대출채권	1,774	1,919	영업비용	25,691	25,240
유형자산및기타자산	14,629	14,238	영업이익	22,735	19,077
자산총계	73,229	73,514	영업외수익	36	5
기타부채등	7,118	8,364	영업외비용	428	672
부채총계	7,118	8,364	경상이익	22,343	18,410
자본금	45,000	45,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113	254	특별손실	-	-
자본조정	20,998	19,896	법인세	6,330	4,513
자본총계	66,111	65,150	당기순이익	16,013	13,897

라. 운용자산규모(기준일 : 2010년 11월 1일 / 단위 : 억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자산	총 계
26,900	33,694	31,564	61,448	4,490	0	2,365	4,926	165,387

- 2.운용관련 업무 수탁 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기타 집합투자기구 가. 신탁회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Tel : 1566-1111)
홈페이지	http://www.hanabank.com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 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1 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의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의 여부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5. 기준가격 산출이 적절한지의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7.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의 여부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HSBC 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영등포구여의도동 26-4 (02-3771-9833)
회사연혁	2000.3.23 에이애텍 설립 2000. 5. 2 에이애텍 설립등기 2003. 8. 1 HSBC, 에이애텍 지분인수(82%)

(2)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한국채권평가	(110-730)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399-3350 -http://www.koreabp.com -설립일: 2000.05.29 / 등록일: 2000.07.01 -자본금: 50 억원
나이스채권평가	(150-97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성빌딩 6층 (02)398-3900 -http://www.npricing.co.kr -설립일: 2000.06.16 / 등록일: 2004.06.29 -자본금: 55.5 억원
KIS 채권평가	(150-88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02)3215-1400 -http://www.bond.co.kr -설립일: 2000.06.20 / 등록일: 2004.06.29 -자본금: 30 억원

(2)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예탁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

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 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 가. 정기보고서

에 관한 사항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을

3)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ubs-hana.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정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1)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설정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

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투자증권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선정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 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다. 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 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한다. 5.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p>결과를 통보한다.</p> <p>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 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 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p> <p>-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 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별첨]

[연금저축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가. 투자방법 등

- (1) 투자자는 분기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나. 투자신탁의 투자기간 등

- (1) 이 투자신탁의 투자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 1) 적립기간 : 10년이상 연단위
 - 2) 거치기간 : 적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직전일까지
 - 3) 연금지급기간 : 5년이상 연단위
- (2) 수익자는 적립기간중 1년이상 연단위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기간의 단축은 단축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수익자는 투자기간중 1년이상 연단위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 납입증명서 발급등

- (1) 판매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이하 “납입증명서”라 한다)을 발급합니다.
- (2) 수익자가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라. 투자신탁의 전환

- (1) 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매년 4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하나UBS 인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2) 하나UBS 인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3) 하나UBS 인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 4) 하나UBS 인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 (2)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이외의 다른 투자신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약관의 변경의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금증권[국공채] 또는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4)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금증권[주식혼합] 또는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5) 제3항, 제4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 1) 연금증권[국공채]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 2) 연금증권[주식혼합]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 다만,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6) 제3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제4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시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경과 후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영업일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연금증권 [국공채]	타투자신탁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판매회사의 영업일
연금증권[채권]	타투자신탁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 투자신탁간의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영업일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연금증권 [주식혼합]	타투자신탁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연금증권[주식]	타투자신탁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 투자신탁간의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시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경과후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마.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 (1) 수익자는 투자기간중 판매회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에 의한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한도 초과등의 사유로 이전청구의 접수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응하지 아니합니다.
- (3) 제1항에 의한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일괄 이전처리합니다.
- 1) 연금증권[국공채]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4영업일)에 이전합니다.
 - 2) 연금증권[주식혼합]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4영업일)에 이전합니다.
- (4) 제3항제1호에 의한 이전청구의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제3항제2호에 의한 이전청구의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5시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경과 후 청구한 이전의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이전청구 투자신탁	이전 청구 투자신탁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이전 청구 투자신탁 이전처리일		영업일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연금증권[국공채]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판매회사의 영 업일
연금증권[채권]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청구의 취소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이전청구 투자신탁	이전 청구 투자신탁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이전 청구 투자신탁 이전처리일		영업일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연금증권 [주식혼합]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한국거래소의 개정일
연금증권[주식]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청구의 취소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 당일 15시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경과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이전청구의 취소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바. 연금의 지급개시

- (1) 판매회사는 연금지급개시일에 수익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을 개시합니다.
- (2) 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당초 연금지급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연금지급개시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후 연금지급기준일은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 연금의 지급방법

- (1) 연금의 지급은 “좌수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좌수분할식”이란 매회 연금지급일 현재

수익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를 잔여연금지급 회수로 균등분할하고 당회 지급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평가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begin{aligned} \text{※ 연금지급액} &= (\text{연금지급일 현재 수익증권 잔고좌수} \div \text{잔여연금지급회수}) \\ &\quad \times \text{연금지급일 현재 1,000좌당 기준가격} \div 1,000 \end{aligned}$$

- (2) 연금지급주기는 매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3개월단위, 6개월단위 또는 1년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매월단위, 3개월단위, 6개월단위 또는 1년단위 상호간에 연금지급주기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 1) 수익자가 당초 약정한 연금지급주기보다 장기로 변경신청한 때 : 변경전 연금지급주기에 의하여 지급된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 최초 약정연금지급일에 변경전 연금지급주기에 의하여 계산된 해당기간분 금액을 지급합니다.
 - 2) 수익자가 당초 약정한 연금지급주기보다 단기로 변경신청한 때 : 변경후 약정연금주기에 의하여 지급할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 최초 약정연금지급일에 해당기간분 금액을 지급합니다.
- (4) 연금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약정연금지급일의 기산일은 연금지급기준일로 합니다.
- (5) 수익자가 약정연금지급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지급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연금 지급일 현재 투자재산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 투자신탁계약의 중도해지

- (1) 수익자가 적립기간 만료전에 투자재산을 인출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지급외의 형태로 투자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합니다.
- (2)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후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당해 계좌를 중도해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해지 처리된 경우 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 옵션과 유사합니다.

